

1. 개정이유

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등록하고,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“기성회비”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제대군인확인서」 발급 서식 등록(안 제12조제2항 신설)

- 1)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
- 2)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

나. “기성회비” 용어 삭제(안 제8조제2항)

- 1)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·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. 해당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- 2) 별지 제18호서식, 제19호서식, 제20호서식에서 “기성회비”용어 삭제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수업료 및 기성회비를”을 “수업료를”로, “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”를 “입학금·수업료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법률구조 대상 확인서)”를 “(확인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2조제5항의 제대군인확인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.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신설 2020. . .>

제대군인 확인서

발급번호			
확인대상자	대상구분	등록번호	구분
	성명		생년월일
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	제출처

위 확인대상자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제19조에 의한 교육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확인

우	주소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
			전자우편주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수업료 및 기성회비”를 “수업료”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“제대군인(자녀) 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”를 “제대군인(자녀) 입학금·수업료 지급청구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수업료 및 기성회비”를 각각 “수업료”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“제대군인(자녀) 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”을 “제대군인(자녀) 입학금·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대군인 확인서

발급번호			
확인대상자	대상구분	등록번호	구분
	성명	생년월일	
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제출처	

위 확인대상자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제19조에 의한 교육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확인				
우	주소	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	전자우편주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) ① (생략)	제8조(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(자녀) <u>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</u> 지급청구서(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)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(자녀) <u>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</u> 보조대상자 명단(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)을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 <u>수업료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입학금·수업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입학금·수업료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<u>법률구조 대상 확인서</u>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<u>확인서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영 제2조제5항의 제대군인 확인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.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